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00 |
|----------|-----|

2011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2월 20일, 임형균 의원 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10년 12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2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임형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합숙소에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관련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시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시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5항)
-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제6항).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관리위원회”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합숙소에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시장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를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제3항, 제4항, 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합숙소에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에 관해서는 위탁만료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함.
-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서울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며, 제3항에서 “문화국”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수정한 것은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3조제5항에서 “시장은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조문을 신설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될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또한 시장이 결정하는 주요사항(제1호~제3호)을 제외한 결정사항은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은 체육행정을 위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3조제7항의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관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문체육활동에 대한 시장의 독단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함. 또한 동항 제4호에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 지도자 및 선수 대표 각 1명을 포함 시킨 것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현실적인 체육정책을 반영할 수 있고, 선수와 지도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됨. 이 밖에 안 제3조제7항의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인원수는 안 제3조제7항제1호~제5호 인원수의 합과 맞지 않으므로 11명으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조제2항에서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동 조례안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경기부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제4항에서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직장경기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안 제9조제3항에서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위탁만료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탁운영업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60일전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제2호 중 “제23조”를 “제9조”로 함.

- 안 제3조제1항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고 한다)”로 함.
- 안 제3조제5항 본문 중 “결정”을 “심의”로 하고, 제2호 중 “급여 및 수당”을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으로 함.
- 안 제3조제6항 중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거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정한다”를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함.
- 안 제3조제7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함.
- 안 제3조제7항제1호 중 “시장이 추천하는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시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제3호 중 “시민단체의 추천 3명”을 “수탁기관 관계자 1명”으로 하고, 제4호 중 “각 1명”을 “중 1명”으로 함.
- 안 제5조제2항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를 “시장이 따로”로 함.
- 안 제7조제4항 중 “간호사”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로 함.
- 안 제9조제3항 중 “위탁만료일”을 “위탁만료 60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200 |
|----------|-----|

제안년월일 : 2011년 2월 24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원을 재조정하고, 급여 등의 결정권자를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시장으로 수정하며, 운영의 위탁 및 재위탁 기간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가. 상위법의 개정 조문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 다.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심의하도록 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3조제5항).
- 라.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 마.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을 조정함(안 제3조제7항).
- 바. 급여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사. 선수합숙소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아.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제23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5항 본문 중 “결정”을 “심의”로 하고, 제2호 중 “급여 및 수당”을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으로 한다.

안 제3조제6항 중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거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정한다”를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7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7항제1호 중 “시장이 추천하는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시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제3호 중 “시민단체의 추천 3명”을 “수탁기관 관계자 1명”으로 하고, 제4호 중 “각 1명”을 “중 1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를 “시장이 따로”로 한다.

안 제7조제4항 중 “간호사”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위탁만료일”을 “위탁만료 60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p> <p>3. ~ 5. (생략)</p> |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5. (현행과 같음)</p> |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p> <p>..... 제9조.....</p> <p>.....</p> <p>.....</p> <p>.....</p> <p>3. ~ 5. (개정안과 같음)</p> |
| <p>제3조(설치 등) ① <u>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를 둔다.</u></p> <p>② (생략)</p> <p>③ <u>단장은 시의 문화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시의 문화국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문화국 체육진흥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u></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u>경기부 총괄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은 선수합숙소의 관리, 운영경비의 청구, 집행 및 결과보고, 그 밖에 단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u></p> |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u>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진흥과.....</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p> |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u>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u>시장은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u></p> |

| | | |
|---|---|--|
|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을 통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5조(급여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시장</u>이 따로 정한다.</p> <p>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u></p> <p>⑥.....</p> <p>.....</p> <p>.....</p> <p>.....<u>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자문을 거쳐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u></p> <p>⑦ <u>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1. 시장이 추천하는 2명</u></p> <p><u>2. 시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u></p> <p><u>3. 시민단체의 추천 3명</u></p> <p><u>4. 지도자 및 선수대표 각 1명</u></p> <p><u>5. 경기부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p>제5조(급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체육진흥관리위원회</u>가.....</p> <p>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u></p> | <p>3. (개정안과 같음)</p> <p>⑥.....</p> <p>.....</p> <p>.....</p> <p>.....<u>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p> <p>⑦.....</p> <p><u>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전문가 3명</u></p> <p><u>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u></p> <p><u>3. 수탁기관 관계자 1명</u></p> <p><u>4.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u></p> <p>5.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급여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p> <p>.....</p> <p>.....</p> <p>.....<u>시장이 따로</u></p> <p>.....</p> <p>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u>④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u></p> |
|---|---|--|

| | | |
|---|--|--|
| <p>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u>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체육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u>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경기부 운영,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u></p> | <p>제9조(운영의 위탁) ①.....<u>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u></p> | <p><u>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u></p> <p>제9조(운영의 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u>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u></p>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3조”를 “제9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진흥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⑤ 시장은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⑦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3. 수탁기관 관계자 1명
4.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5. 경기부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시장은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 5. (생략)</p> <p>제3조(설치 등) ① <u>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를 둔다.</u></p> <p>② (생략) ③ <u>단장은 시의 문화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시의 문화국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문화국 체육진흥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u> 1. ~ 3. (생략) ④ (생략) ⑤ <u>경기부 총괄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은 선수합숙소의 관리, 운영경비의 청구, 집행 및 결과보고, 그 밖에 단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u></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을 통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신설></p> |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3.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u>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진흥과</u>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장은 경기부의 설치·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 사항 ⑥..... <u>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 ⑦ <u>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u></p> |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체육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경기부 운영,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3. 수탁기관 관계자 1명

4.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5. 경기부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위탁)①.....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

② (현행과 같음)

③.....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